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8 선고 2019가단5407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(개명전 : F)

4. G

5. H

변론 종결2020. 4. 7.

판결 선고2020. 4. 2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,784,655원 및 그 중 41,326,052원에 대하여 2019. 10.

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. 2. 4. 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3. 5.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김상근

별지